

총판 코드: -

총판 상호: -

# 자 대 리 점(가맹점모집인) 계 약 서

2025. .

본 사 : 주식회사 코 밴

자대리점 :

주식회사 코밴(이하 "본사"이라 한다)과 (가맹점모집인) 대표자 : (이하 "대리점"이라 한다)은 "대리점"이 "본사"의 위탁을 받아 VAN 서비스 관련 가맹점 모집 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본사"와 "대리점" 사이의 권리, 의무 및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본사"가 "대리점"에게 "본사"의 VAN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맹점 확보 및 유지, 관리 업무를 위임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라 한다) 및 기타 법규, 시행령, 규정, 규약의 준수를 위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이익을 존중하고 계약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

1. "본사"는 "대리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조 각 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여전법상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한 보상을 지급하거나 약속하는 경우  
예 1) 신용카드거래의 발생 건수와 관련하여 현금을 지급(건당 〇〇 원으로 일명 캐쉬백)  
예 2) 신용카드가맹점계약이나 카드단말기설치계약 등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유무형의 보상을 제공 (CCTV 설치, 일시 지원금, 사례금, 보상금, 기부금 등)  
예 3) 신용카드거래에 사용되는 일체의 장치(신용카드 단말기, POS, 서명패드, 동글, KIOSK, 스캐너 등)를 무상으로 임대 내지 제공  
예 4)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회선비(전화, 인터넷, 전용선 비용 등)를 대신 지급  
예 5)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과 관련된 용역비를 지원하거나, 해당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개발하여 제공  
(“본사” 및 “대리점”이 일반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 및 관리시스템 이용은 제외)  
예 6) 신용카드가맹점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나 기부금 제공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보상을 지급  
예 7) 전표용 지의 통상적인 지원을 과도하게 넘는 무상 제공  
예 8) 기타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자기와 거래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부당하게 제공 되거나 약속되는 모든 유·무형의 대가
  - 2) 신용카드 가맹점의 신용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 변조한 경우  
예 1) 가맹점 점주의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점주의 서면동의 없이 유출하는 경우  
예 2)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거래내역 등을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예 3) 중고 POS 설치 또는 폐기시 기존 정보를 삭제하지 않아 유출되거나 유출 위험성이 있도록 방치 할 경우
  - 3) 신용카드가맹점에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예 1) 단말기 고장 등으로 인한 A/S 시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를 설치  
예 2) 등록되지 않은 IC 단말기의 재사용
  - 4)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 및 영업행위 모범기준이나 본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예 1)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을 대신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모집을 위탁하는 경우<sup>1</sup>

- 예 2) 가맹점 모집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 예 3) 기존 대형 가맹점 점주가 동일한 사업을 사업자등록만 변경하여 재개점하는 등 신규 가맹점이더라도 여전법상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될 것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

<sup>1</sup> '가맹점모집인 등록 및 관리규정' 제 13 조 제 5 호는 '제 3 자로 하여금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을 대신하게 하거나 위탁하지 아니할 것'을 가맹점모집인의 준수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동규정제 16 조는 부가통신업자에게 가맹점모집인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가맹점의 등록을 신용카드사와 가맹점모집인간의 위탁(계약)의 문제라고 보더라도, 부가통신업자도 가맹점모집인의 모집위탁금지 의무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본사"는 제 1 항의 경우 "대리점"에게 소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리점"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사"는 소명 자료의 제출시부터 "대리점"의 소명자료가 정당하다고 판단되기 전까지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대리점"의 가맹점 위탁관리 등 업무의 일부의 수행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3. "본사"는 "대리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 2 항의 소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대리점"의 소재불명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등 그 기간 내에 소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바로 제 4 항의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4. "본사"는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른 "대리점"의 소명 내용에 따라 제 1 항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본사"의 '대리점 관리 시스템(CATECA)'에 공지할 수 있다.
  - 1) "본사"는 "대리점"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대리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 1 항 제 2 호의 위반 행위가 중대한 경우 에는 즉시 본 항 제 2 호 및 제 3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2) "본사"는 "대리점"이 본 조 제 1 호의 시정요구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않거나, "대리점"의 위반행위가 2 회 발생 할 경우, 재차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위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대리점"의 수익의 2 배의 위약벌을 "대리점"에게 부과하고, 영업정지 1 개월의 제재를 취할 수 있다.
  - 3) "본사"는 "대리점"이 본 조 제 2 호의 시정요구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않거나, "대리점"의 위반행위가 3 회 이 발생한 경우,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대리점"의 수익의 2 배의 위약벌을 "대리점"에게 부과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4) "본사"는 "대리점"에 대하여 본 조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조치를 취할 경우 금융위원회 등에 신고하고,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한국신용카드연합회를 통해 "대리점"의 위반행위를 부가통신업자에게 공지한다.

**제 3 조 [용어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맹점모집인"은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가맹점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고, 부가통신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자로서 여전법 제 16 조의 3 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가맹점"이란 여전법 제 2 조 5 호에서 정한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하며 VAN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대형가맹점"이란 여전법 제 18 조의 3 제 4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점을 말한다.
4. "특수 관계자"란 가맹점의 VAN 서비스에 실질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 조에 따른 공공기관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5)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 급 학교
  - 6) 다수의 가맹점이 소속된 영리 또는 비영리 법인
  - 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다점포)
  - 8) 전자금융거래법 상 신용카드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
  - 9) 가맹점의 서비스 일부를 대행하는 자로서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시스템 사업자 및 자신의 그룹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대기업 계열사 등
  - 10) 여전법 제 2 조 17 가목에서 말한 특수 관계인
5. '금품류'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1) 물품 및 기계, 기구,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사용권을 포함한다.)
  - 2) 금전(판매장려금, 선투자지원금, 계약 장려금, 발전기금, 영업 수수료 등 명목을 불문한다.), 예금증서,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및 각종 명목의 지불이행 각서
  - 3) 근로 및 기타 서비스
  - 4) 향응(음식물, 영화, 연극 등 각종 공연 및 스포츠, 여행, 골프, 스키 등 각종 행사에 대한 초대 또는 우대를 포함하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 4 조 [관계규정준수]**

"본사"와 "대리점"은 본 계약에 의한 위탁업무 수행에 있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여전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본 계약사항을 다음과 같이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대리점"은 '여전법', '부가통신업자의 영업행위 모범규준', '가맹점모집인 등록 및 관리 규정', 'VAN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공정경쟁 규약'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대리점"은 가맹점 및 특수 관계자에게 금품류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맹점 및 특수 관계자에게 금품류를 직접 제공한 것으로 본다.
  - 1) 가맹점 및 특수 관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의도로 제 3 자에게 금품류를 제공한 경우
  - 2) 가맹점 및 특수 관계자의 임직원에게 금품류를 제공한 경우
  - 3) 특수 관계자 등과 VAN 서비스와 관련된 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하고 그 대가로 금품류를 제공하는 경우
3. "대리점"은 가맹점 및 특수 관계자에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가맹점 및 특수 관계자의 거래 상대방으로 선정되도록 약속되어 있는 경우
  - 2) 가맹점 및 특수 관계자의 거래 상대방 선정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기부 요청에 응하는 경우

3) 사회통념상 가맹점 및 특수 관계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동산, 비품구입,

시설 증·개축, 경영자금보전 등에 사용되는 자금이 충당되는 경우

- 4)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일한 가맹점 및 특수 관계자에 반복적·지속적으로 기부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4. "대리점"은 가맹점의 모집 및 유지를 위하여 여전법상 대형가맹점을 제외한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VAN 서비스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그 외 금품류의 제공은 금지 된다.
- 1) 여전법상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신용카드단말기
  - 2) 결제 승인을 위한 별도의 서버와 연결되지 않은 독립 PC 형 POS 장비
  - 3) 제 1 호 및 제 2 호의 단말기 및 POS 장비와 직접 연결하는 신용카드전표 인쇄 장비, 서명패드, IC 리더기, Swiper 및 동글 등 보조 장비
  - 4)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하는) 신용카드 전표 용지
5. "대리점"은 가맹점 모집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맹점 신청인의 정보를 업무 목적 외 누설하거나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 5 조 ["본사"의 업무]**

1. "본사"는 "대리점"의 여전법 및 관련 법규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조사 이외에 "본사"가 직접 "대리점"에 대한 실태점검 조사를 할 수 있다.
2. "대리점"은 "본사"가 위임한 업무에 관한 활동 상황의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 성실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본사"는 본 계약에서 위임한 업무와 관련하여 "대리점"에게 정기 또는 수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대리점"은 이수하여야 한다.

**제 6 조 [대리점 (가맹점모집인) 구비요건]**

1. "대리점"은 "본사"의 소속 가맹점 모집인으로 금융위원회(여신전문금융협회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2. "대리점"은 사업자가맹점모집인 등록에 필요한 정확한 최신정보를 "본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대리점"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여야 한다.
4. "대리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가맹점을 직접 방문하여 각 가맹점의 영업여부 및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단말기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대리점"은 제 3 자로 하여금 가맹점의 모집을 대신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없다.
6. "대리점"은 가맹점을 모집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보상금 등 제공할 수 없다.
7. "대리점"은 가맹점의 모집 및 단말기의 판매, 설치, 유지보수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과 영업시설, 담당 직원을 보유 하여야 한다.
8. "대리점"은 "본사"가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가맹점과 맺는 계약에 협조하여야 한다.
9. "본사"가 여전법 제 16 조의 3 에 따라 "대리점"을 "본사"의 가맹점모집인으로 등록함에 있어 "대리점"은 여전법 시행령 제 6 조의 10 및 가맹점모집인 등록 및 관리 규정 제 5 조와 6 조의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7 조 [업무위탁의 범위]**

"본사"는 다음 각 항의 업무를 "대리점"에게 위탁한다.

1. "본사"의 VAN 서비스 이용 가맹점 모집에 관한 업무 및 그 부대 업무  
(VAN 서비스라 함은 신용카드 승인조회서비스, 신용판매 대금자동이체서비스, 직불카드서비스, 현금 영수증 서비스 등 "본사"가 제공하는 일련의 서비스를 말한다.)
2. "본사"의 VAN 서비스 이용 가맹점에 대한 관리 업무 및 그 부대 업무(단, 가맹점에 대한 관리는 "본사"로부터 위탁 받은 범위 내에서 관리권을 가진다.)
3. "본사"의 VAN 서비스 이용 가맹점으로부터 회수해야 할 채권 회수 업무 및 그 부대 업무
4. "대리점"이 모집 또는 관리하는 가맹점의 매출전표 수거, 정리 및 그 부대 업무
5. "본사"로부터 구매한 신용카드 조회기 및 관련 정보기기 판매, 설치 및 전표 공급, 고객 불편사항 처리업무 및 그 부대 업무
6. "본사"의 공문, 홈페이지를 통해 전달하는 영업 지침과 관련된 업무 및 그 부대업무

## 제 8 조 [고객 및 가맹점 민원처리]

1. "대리점"은 "대리점"이 모집 또는 관리하는 가맹점이나 고객으로부터 민원이 제기 되는 경우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2. "본사"는 "대리점"에서 관리하는 가맹점이나 고객에게서 발생하는 민원 및 요청사항에 대하여 "대리점"에게 통지 한 후 "대리점"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거나 "본사"가 직접 처리 할 수 있다.
3. "대리점"은 자신의 민원업무처리 잘못으로 가맹점 및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 제 9 조 [시장자료수집]

"본사"는 영업정책 수립 등의 목적으로 시장변화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수집을 "대리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대리점"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 10 조 [영업 양도 및 위임제한]

1. "대리점"은 "본사"와 사전 협의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 및 의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으며,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대리점"이 법인일 경우, 계약 체결시의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 1 인의 변경은 영업의 양도로 간주 되며, 이 경우 "대리점"은 필히 "본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제 11 조 [계약기간]

이 계약은 202    년    월    일부터 202    년    월    일까지 유효하다. 다만, 계약 만료 3 개월 전까지 "갑"은 "을"에게 계약 만료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회신 또는 의사의 표시가 없는 경우 1 년간 계약이 연장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 제 12 조 [목표관리 및 교육]

1. "본사"는 경영계획, 영업환경, 실적, 시장수요 등을 감안하여 "대리점"에게 영업 목표를 부여할 수 있으며, "대리점"은 부여 받은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2. "본사"는 "대리점"의 영업실적 및 기여도 등에 따라 영업권, 재계약, 계약해지 등과 관련한 평가를 할 수 있다.
3. "본사"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대리점의 위탁업무 수행 및 본 계약 이행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 협의, 권고, 지도 할 수 있다.

**제 13 조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1. "본사"는 "대리점"이 가맹점모집인 등록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사"는 여전법 제 16 조의 3 제 4 항에 의하여 "대리점"을 가맹점모집인으로 여신금융협회에 등록한다. 단, 이미 가맹점모집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여신금융협회가 전 항의 가맹점모집인 등록요건 미비를 이유로 "본사"에 관련 사항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본사"는 해당 사실을 "대리점"에게 통지하고, "대리점"은 즉시 이에 대한 보완을 하여야 한다.
3. 가맹점모집인 등록이 최종적으로 불허되거나 "대리점"의 가맹점모집인 등록이 취소될 경우 "본사"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가맹점모집인이 될 수 없다.
  - 1)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3) 여신금융업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여신금융업법에 따라 가맹점 모집인의 등록이 취소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 1 호부터 4 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자
  - 6)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써 그 임원이나 관리인 가운데 제 1 호부터 4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5. "대리점"은 "본사"의 정책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가맹점"을 모집한다. 단, "가맹점"과 "본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분쟁 또는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대리점"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한다.
6. "대리점"이 "가맹점"에 "본사"가 공급하는 제품을 설치할 경우 "IC 카드단말기설치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가맹점"으로부터 받아 보관하여야 하고, "본사"가 "가맹점"에 대한 제품 설치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7. "대리점"은 직접 모집한 "가맹점"과 "본사"가 요청하는 "가맹점"에 대하여 "본사"로부터 공급 받은 제품을 설치하여야한다.
8. "대리점"은 직접 모집한 "가맹점"과 "본사"가 요청하는 "가맹점"에게 "본사"로부터 공급 받은 제품(단말기) 사용에 따른 유선통신사업자의 대표번호서비스 이용요금이 발생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한다.  
(신용카드 결제 대표번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맹점에 해당)
9. "대리점"은 "본사"가 관리 요청한 "가맹점"에 대하여 "본사"의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품의 A/S, 망실 방지 등 제품 관리와 "본사"의 서비스 이상 유무 및 가동상태를 체크하여야 하며, "가맹점" 정보변경 내용 통지, 단말기 사용법 숙지 및 교육, 단말기 기능변경에 대한 적용 등 원활한 "본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10. "대리점"의 귀책사유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6 조의 4 (등록취소)"에 의하여 가맹점 모집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대리점"은 이로 인한 "본사"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가맹점"관리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본사"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 14 조 [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

1. "대리점"은 "본사"로부터 구매한 제품에 대하여 가맹점에 무상임대 또는 판매할 권리만을 가지며, "본사"의 제품과 관련된 Software, 기술정보 등 모든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는 "본사"에게 있다.
2. "대리점"은 제품에 대한 "본사"의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및 기타 표시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본사"로부터 사전에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제품에 표시물을 추가할 수 없다. "본사"의 상표라 함은 제품, 제품과 관련된 책자, 매뉴얼, 판촉물 등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상표, 상호, 고안물, 설계 및 로고 등을 의미한다.

**제 15 조 [제품판매 및 A/S]**

1. "대리점"은 "본사"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반드시 "대리점"이 관리하는 가맹점에 임대 또는 판매하여야 한다.
2. 제품에 대한 A/S 는"대리점"이 1 차적으로 책임지며, 필요시 본사 또는 제조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제 16 조 [자체공급 제품에 대한 관리]**

1. "대리점"은 "본사"를 통해 공급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가맹점에 공급한 제품에 대하여 모든 관리의 책임은 "대리점"에게 있다.
2. "대리점"은 POS 단말기의 경우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에서 제작, 배포한 "POS 단말기 보안표준"이 적용된 표준보안모듈을 탑재한 제품을 가맹점에 공급하여야 하며, 가맹점에는 POS 보안 강화를 위한 충분한 고지와 홍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조 제 1 항과 제 2 항을 수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민원 또는 사고에 대하여 "대리점"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하며, 해당 민원 또는 사고로 인하여 "본사"가 카드사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거나 손해배상을 요구 받은 경우 "본사"는 "대리점"에게 시정 요청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7 조 [금품류의 제공금지 및 기부행위 위반 등의 조치]**

1. "대리점"은 다른 부가통신업자나 다른 가맹점모집인이 금품류의 제공 또는 기부행위 등 관련 규준/규약 등을 위반하는 사안을 알게 된 경우, "본사"를 통해 '부가통신업자의 영업행위 모범규준'에 첨부된 '모범규준확인요청서'를 작성하여 사단법인 한국신용카드뱅크협회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본사"는 "대리점"이 금품류의 제공 또는 기부행위 등 관련 규준/규약 등을 위반하는 사안을 알게 된 경우 사단법인 한국신용카드뱅크협회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밟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대리점"은 이 절차에 따른 징계를 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제 18 조 [DDC 서비스의 신청 및 점검]**

1. "본사"의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 거래의 결제대금을 별도의 청구 없이 가맹점의 지정 계좌에 자동 입금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사"가 가맹점의 신용카드 거래에 대하여 수행하는 Data Capture 와 "대리점"이 대행하는 Draft Capture 등의 일련의 서비스를 DDC 라 한다. Data Capture 는 가맹점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거래승인내역 중 매입분을 Capture 하여 대금청구 File 을 생성한 후 카드 회사에 on-line 또는 기타 저장장치로 전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Draft Capture 는 “대리점”이 가맹점으로부터 매출전표를 수거하여 “본사”에게 제출하면 “본사”가 향후 5 년간 카드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대리점”은 “본사”가 지정한 소정 양식의 청약서류를 가맹점으로부터 받아 “본사”에게 제출함으로써 가맹점의 서비스 이용 신청을 대행한다.
3. “대리점”은 가맹점이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내용에 대한 안내와 단말기 점검 등 사전 조치를 취하며, 서비스 개시 후에도 서비스 제공이 원활한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4. 대리점은 가맹점의 아래와 같은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본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 1) 가맹점의 전업, 폐업 및 명의변경
  - 2) 가맹점번호 및 사업자번호의 변경
  - 3)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변경이 있을 경우

**제 19 조 [DDC 서비스 제공의 제한]**

1. “본사”는 각 카드회사와 “본사”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 가맹점을 제한 할 수 있다.
2. “대리점”은 가맹점이 불법, 위장, 불량 가맹점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본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대리점”이 허위, 기망의 방법으로 DDC 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대리점”이 부담 한다.

**제 20 조 [매출전표 수거방법]**

1. “대리점”은 주 1 회 이상 가맹점을 방문하여 발생한 매출전표 원본 전량을 수거하고 가맹점별, 카드사별, 일자별로 정리하여 최소 월 2 회 이상 “본사”가 지정한 업체로 지정한 일자에 송부하여야 한다.
2. “본사”는 카드사로부터 요청을 받은 매출 전표가 “본사”의 전산에 수거등록 되지 않은 경우 “대리점”에게 긴급하게 가맹점 방문 수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점”은 아래와 같이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 1) 매출 발생일로부터 1 개월 이내 건 : 요청 즉시(24 시간 이내)
  - 2) 매출 발생일로부터 1 개월 이후 건 : 3 일 이내
3. “대리점”이 비록 카드사용 매출전표 원본을 가맹점으로부터 회수하여 “본사”에게 송부하였다 할지라도 해당 가맹점에 대하여 최소 5 년은 가맹점용 매출전표를 보관하도록 반드시 주지시켜야 한다.
4. 가맹점의 부주의로 인하여 손 망실된 전표에 대해서는 가맹점 보관용 전표(혹은 사본) 또는 소정 양식의 협약서를 확보하여 “대리점”이 보관하여야 한다.
5. “대리점”은 대리점 계약의 해지 또는 “본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 가맹점에서 수거한 전표 전량을 “본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1 조 [DDC 서비스 관련 책임]**

1. “대리점”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은행 및 카드사의 전표 제시 요구에 대하여 제 20 조 2 항의 전표 제시 기한 내에 전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며, “본사”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차감할 수 있다.

2. "대리점"은 DDC 서비스와 관련하여 전표 제시 등 민원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를 3 일 이내에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점"이 해당 기간 내에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여 "본사"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대리점"은 "본사"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3. "대리점"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불량 매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본사"는 이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최대한 협조한다. 또한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불량 매출로 "본사"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대리점"은 "본사"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대리점"이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사"가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한다.
  - 1) 무승인 매출
  - 2) Swipe 또는 IC 거래가 아닌 불량 매출
  - 3) 위조 및 변조카드(Magnetic Stripe, IC 카드 등)로 인한 불량 매출
  - 4) 가맹점에서 회원의 동의 없이 고의적인 거래조작으로 발생한 이중 또는 허위 매출
  - 5) 제 20 조에 규정한 대로 "본사"에게 제출한 매출전표를 해당 카드회사(은행)에 제시하였으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
  - 6) 매장이 없는 허위 가맹점에서 발생한 사고 매출
  - 7) "대리점"의 교육 및 안내 미흡으로 가맹점에 의한 단말기 조작 오류로 인한 오류 매출
  - 8) 가맹점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단말기를 임대 또는 대여하거나 "을"과 가맹점이 결탁하여 단말기를 불법적으로 개조 또는 수리하여 발생시킨 부정 매출
  - 9) "대리점"이 현금유통업체, 전표유통업체 등 불법, 불량가맹점과 연계된 경우
  - 10) 기타 서비스 관련한 등록 및 업무 처리에 있어서 "대리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 매출
4. "대리점"이 설치한 단말기에서 발생한 거래가 현행 법규에 위반되는 불량 거래로 추정된 경우 "본사"는 동 단말기에 대하여 신용카드 취급을 금지할 수 있으며, "대리점"은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대리점"은 카드 회사와 가맹점 간에 수기 특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가맹점에서 압인 되지 아니한 수기 전표, key-in 및 전표 출력 방식으로 카드 매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만약 사고로 인하여 "본사"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대리점"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본사"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6. "대리점"은 가맹점에 단말기를 설치하는 경우 download 불량(가맹점 정보 불일치)으로 인하여 타 가맹점에 매출이 발생하여 그 가맹점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전적으로 동 손해에 대하여 부담한다.
7. "대리점"은 가맹점에서 단말기에 부착된 공용 매출 전표에 key-in 방식으로 카드번호를 인쇄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22 조 [전표수거 수수료]**

1. "본사"는 본 계약서 상의 기준에 따라 "대리점"에게 전표수거료를 지급한다.
2. "본사"가 "대리점"으로부터 회수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전표수거료에서 차감할 수 있다.
3. 서비스 가맹점에서 "대리점"의 홍보 미흡 및 업무 수행상 과실로 인하여 이미 정산된 매출전표가 카드사에 재 접수되어 카드사로부터 "본사"에게 재통지된 경우 "본사"는 동 매출전표 접수건에 대하여 매 건당 하자 보상금 500 원 (VAT 별도)을 차감하기로 한다.

**제 23 조 [DESC 서비스의 정의]**

1. "DESC 서비스"란 Data capture 업무와 Electronic signature capture 업무를 말한다.  
(Data capture 업무는 DDC 서비스의 Data capture 업무와 동일하다.)
2. "Electronic Signature Capture 업무"라 함은 전자 서명기(이하 "Sign-pad"라 함)가 설치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거래 발생 시 그 신용카드 회원의 서명 정보를 전자적 이미지 데이터로 Capture 하여 카드사 또는 카드사가 지정한 장소에 전송하여 5년 동안 보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Sign-pad"라 함은 신용카드 거래 시 당해 신용카드 회원의 서명 정보를 전자적 이미지 데이터로 변환하여 Capture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력하는 회사가 공급하는 기기장치를 말한다.
4. "전자전표"라 함은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 거래를 할 경우, 가맹점에 설치된 단말기와 전자 서명기를 통해 해당거래 내역과 회원이 입력한 서명정보를 전자적 데이터로 Capture 하여 이를 신용카드 매출 전표 양식 등에 복원, 출력한 것을 말한다.

**제 24 조 [DESC 서비스 업무범위]**

1. "본사"는 DESC 서비스 업무 중 일부인 다음 사항을 "대리점"에게 위임하고 "대리점"은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
  - 1) 가맹점에 Sign-pad의 설치 및 유지보수
  - 2) 가맹점에 DESC 서비스 개시 및 관련업무
2. 카드사의 DESC 서비스 업무 지침이 변경되거나, 정부정책, 관계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사"가 "대리점"에게 위임하는 업무 범위 및 업무처리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본사"가 "대리점"에게 공문으로 통지하면 당사자 간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제 25 조 [DESC 서비스 개시]**

1. DESC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신용카드 가맹점 중 기존 신용판매대금 자동이체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맹점(DDC 가맹점)이거나 카드사가 정한 DESC 서비스 이용조건을 충족한 가맹점이어야 한다.
2. 가맹점이 DESC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대리점"은 "본사"가 정한 DESC 서비스 이용신청을 가맹점으로부터 받아 DESC 서비스에 필요한 신용카드 조회기 및 Sign-pad를 제공하여야 한다.
3. "대리점"은 서비스 신청을 받은 가맹점이 DESC 서비스 개시가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전산 등록을 하고, 해당 가맹점에 DESC 서비스 이용방법 및 기타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대리점"은 DESC 서비스를 신청한 가맹점에 대하여 카드사의 DESC 개시 요청에 대한 반송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반송일 당일 처리하여 가맹점이 신용판매대금 정산을 받거나 본 서비스 이용에 따른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대리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개시를 위한 전산등록, 카드사 신청 및 기타 서류작성에 오류가 발생하여 가맹점 또는 "본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리점"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26 조 [Sign-pad 공급 및 관리]**

1. "본사"는 DESC 서비스에 필요한 단말기 또는 Sign-pad를 개발하여 "대리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본사"는 "대리점"에게 Sign-pad 를 판매하거나 조건부 임대를 할 수 있으며, 각 Sign-pad 기종별 판매 가격이나 임대조건은 회사가 공지하는 영업정책에 따르기로 한다.
3. "본사"가 "대리점"에게 Sign-pad 를 조건부로 임대하는 경우 "대리점"은 해당 Sign-pad 를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 **제 27 조 [Sign-pad A/S 및 장애처리]**

1. "대리점"은 가맹점이 사용하는 Sign-pad 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에 대한 1 차적인 A/S 제공 의무를 지며 "대리점"은 가맹점의 A/S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2. "본사"는 "대리점"의 A/S 제공에 기술적인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대리점"이 임의적인 방법으로 A/S 를 제공하거나 "본사"의 사전 동의 없이 Sign-pad 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사가 지정한 제조원 또는 회사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 A/S 를 제공하여야 한다.
4. Sign-pad 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Sign data 를 정상적으로 Capture 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가맹점이 매출전표를 3 장을 출력하도록 하고, "대리점"은 이중 1 장을 수거하여 "본사"에 이관하여야 한다. 이관 방법 및 절차는 본 계약서의 "DDC 서비스"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 **제 28 조 [가맹점 관리책임]**

"대리점"은 가맹점이 단말기 또는 Sign-pad 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본사"의 동의 없이 Sign-pad 의 프로그램을 수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 **제 29 조 [인감신고 및 변경]**

"대리점"은 "본사"와 거래하는 동안 사용할 인감을 본 계약서상에 날인함으로써 "본사"에 신고하고, 신고한 인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사"에게 변경사유와 변경할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 **제 30 조 [회사의 상호, 로고 등의 사용]**

1. "대리점"은 "본사"가 사전에 승인한 범위를 넘어서 "본사"의 상호, 로고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승인을 득한 경우라 하더라도 필요 시 "본사"의 지시를 따라 사용 한다.
2. 본 조 제 1 항의 위반으로 인한 "본사"의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대리점"은 "본사"에 손해배상 할 책임이 있다.

#### **제 31 조 [정보 보호]**

1. "대리점"은 업무상 취득한 "본사" 및 가맹점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직접 또는 제 3 자가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되며,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본 조항의 효력은 지속된다.
2. "대리점"은 이동통신 개통절차를 수행하면서 습득한 고객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 "대리점"은 고객정보를 위탁업무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기타 고객정보를 침해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대리점"이 본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본사" 또는 가맹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대리점"은 이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본사" 또는 가맹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본 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정 경쟁 방지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2 조 [불공정 금품수수 금지]**

1. "대리점"은 가맹점에게 다음 각목의 금품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가맹점의 금품류 제공 요구에 응하여서도 아니 된다. 다만, '공정경쟁규약' 운용기준에서 허용하는 금품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물품 및 기계, 기구,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사용권을 포함한다)
  - 2) 금전(판매장려금, 선투자지원금, 계약 장려금, 발전기금, 영업 수수료 등 명목을 불문한다), 예금증서,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및 각종 명목의 지불 이행 각서
  - 3) 근로 및 기타서비스
  - 4) 향응(음식물, 영화, 연극 등 각종 공연 및 스포츠, 여행, 골프, 스키 등 각종 행사에 대한 초대 또는 우대를 포함하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대리점"이 전 항의 규정위반으로 "본사"가 '공정경쟁규약'에 따른 제재를 받을 경우, "대리점"은 이 제재로 인하여 "본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33 조 [경고 및 시정조치]**

1. "본사"는 "대리점"의 정상영업여부 및 영업실적, 부실채권 등을 토대로 자체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에 따라 부적격 "대리점"에 대한 경고, 시정 및 계약해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본사"는 "본사"가 본 계약 또는 기타 "본사"의 지시사항을 위반했을 때, "대리점"에게 경고 또는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리점"은 "본사"의 경고 또는 시정 요청을 접수 후 5일 이내에 시정 및 그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본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대리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사"는 "대리점"에게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가맹점 관리소홀 및 이로 인한 민원을 야기할 경우
  - 2) 영업실적이 전체 유통망의 평균에 현저히 미달할 경우
  - 3) "대리점"의 업무상 비협조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진행이 어려운 경우

**제 34 조 [계약내용의 변경]**

1. "본사"가 본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본사"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적용 예정일 10 일전까지 "대리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본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사"의 변경 내용 통지 또는 홈페이지 게시 후 적용 예정일까지 "대리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대리점"이 변경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대리점"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본 계약은 종료되고, "본사"와 신규 법인 간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본 조 제 2 항의 신규 계약 체결 시 "대리점"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신규 계약 주체에 승계된다.

**제 35 조 [계약해지]**

1. "본사"가 별도의 통보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1) "대리점"이 본 계약의 각 조항 또는 개별계약에 대해 중대한 위반을 했을 경우
  - 2) "대리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실채권 발생 등으로 "본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 3) "대리점"의 부도 등 중대한 사유로 계약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4) "대리점"이 신용정보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경우

- 5) "대리점"이 본 계약 또는 개별 계약을 위반하여 본 계약 제 35 조의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은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개선이 없을 경우
  - 6) 기타 "대리점"이 중대한 계약사항 및 영업 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본사"가 10 일간의 기간을 두고 통보를 한 후에도 "대리점"이 개선을 하지 않을 때 본 계약을 해지하고 "대리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1) "대리점"이 본 계약의 각 조항 또는 개별 계약에 대한 경미한 위반을 했을 경우
  - 2) "대리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거나, "대리점"의 TR 건수("대리점"의 관리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 건수) 실적이 3 개월 이상 연속하여 감소하는 경우 등 계약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 3) "대리점"이 가맹점의 이익을 저해하여 "본사"의 신용을 현저히 손상시키거나, 이로 인해 "본사"가 가맹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
  - 4) "대리점"이 가맹점으로부터 수납한 요금, 연체·부실채권 회수금, 기타 가맹점으로부터 회수한 물품을 횡령하였을 경우
  - 5) "대리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영업장을 5 일 이상 폐쇄한 경우
3. "대리점"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 개월 전에 "본사"에게 계약 해지 사유 및 해지 희망일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며 협의하여야 한다.
4. "본사"는 "대리점"이 본 계약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여전 관련법령 위반과 관련하여 금융당국에 통보할 수 있다.
5. 본 조 1 항, 2 항 또는 3 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본사"에 대한 "대리점"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해지 일에 그 이행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제 36 조 [계약종료에 따른 조치]**

1. 본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 등으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본사"와 "대리점"간에 기 체결된 개별 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대리점"의 책임 하에 있는 가맹점의 모든 권리를 "본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 본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 등으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대리점"은 위탁업무 일체를 "본사"에게 즉시 인계하고, "본사"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와 가맹점 관련 제반 서류 및 "본사"로부터 대여 받은 제품 일체를 반환 하여야 한다.

**제 37 조 [손해배상]**

1. "본사" 또는 "대리점"의 본 계약사항 위반 및 기타 귀책사유로 상대방 또는 제3자가 물질적,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경우, "본사" 또는 "대리점"은 손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손해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2. 본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 등으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계약해지 이전에 발생한 손해의 배상 의무는 그 이행이 끝나는 때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 38 조 [해석 및 관할법원]**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일반적인 상 관례에 따르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본사"와 "대리점"간에 소송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정한 바와 같이 상호 협의하여 관할 법원을 정한다.

본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본사"와 "대리점"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    년    월    일

“본사”

주식회사 코밴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6 길 10

코밴빌딩

사업자 번호 213-81-40742

대 표 이 사 양 원 기 (인)

“대리점”

사업자 번호        -        -

대 표 자            (인)

<별첨>

1. 사용인감 및 사용명판 신고서
2. 정보제공활용 동의서
3. 정보보안관리 서약서
4. 개정 법규 이행 준수 동의서
5. 중고 POS 관련 고객신용정보 보안 확약서
6. 가맹점모집인 등록신청인 고지사항
7. PG 이행 확약서

[별첨 1]

【 사용인감 및 사용명판 신고서 】

서 명	사 용 인 감	사 용 명 판

당 대리점의 서명, 사용인감 및 사용명판을 상기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    년    월    일

대리점 상호 :        —

대표자 성명 :        (인)

## [별첨 2]

### 정보제공활용 동의서

"대리점"은 본인의 정보를 "본사"에 제공하고 "본사"가 VAN 서비스의 제공 및 매출관리, 여신관리, "대리점"에 대한 정산과 Billing 을 위하여 "대리점"의 정보를 법원이나 세무서 금융감독원 등의 공공기관에 제공하거나, 채권추심기관, 카드사에 제공할 수 있음을 숙지하고,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합니다.

## [별첨 3]

### 정보보안관리 서약서

"본사"와 "대리점"간 업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업무상 취득한 정보에 대해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 합니다.

#### 제 1 조 [목적]

본 서약은 양 사의 업무 수행상 발생하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 관리에 대한 정보보안 관리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고 상호 신뢰를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 2 조 [개인정보의 범위]

개인정보에 대한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고객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성별, 국적 및 직업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고객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거래 정보
  - 카드정보 :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CVC 값, 영문성명, 서비스부호 등
  - 거래정보 : 가맹점번호, 사업자번호, 단말기번호, 승인금액, 승인일시, 승인번호 등신용카드 거래와 수반되어 발생하는 신용정보 중 카드정보를 제외한 항목
3. 가맹점 모집 및 영업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
  - "본사"가 제공한 업무시스템을 이용과정에서 취득한 고객 정보
  - 카드매출 전표 상의 고객 정보 등

#### 제 3 조 [정보 보안 및 업무 준수 사항]

1. "대리점"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가맹점의 정보 및 제반 거래 정보와 신용 정보(이하 '정보'라 한다)를 업무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고객정보를 보관·활용하거나 이를 제 3 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 이행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대리점"의 종업원 및 하도급 계약자에 대하여도 "본사"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 하도록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2. "대리점"은 개인정보를 "본사"의 사전 승인 없이는 업무 목적 외로 별도 보관, 저장, 출력, 복사, 가공해서는 아니 된다.
3. "대리점"은 고객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이하, '이용자')를 제한하여야 하며, 전산업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ID 부여 및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이용자 접근통제를 실시해야 한다.
  - 1) 각각의 담당자에게 업무를 부여하여 사용제한 업무 사용권한을 부여한다.
  - 2) 퇴사 등의 사유로 직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접근권한을 말소한다.
  - 3) 각 이용자의 ID 및 패스워드의 공유·누설을 금지하며, 대리점은 각 이용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 할 책임을 진다.

- 4) 안전한 비밀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규칙을 따른다.
  - 문자, 숫자, 특수기호를 조합하여 최소 8 자리 이상 사용
  - 생일,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등 유추하기 쉬운 비밀번호 사용금지
  - 최소 분기 1 회 이상 비밀번호 변경
4. 고객정보를 업무용 데스크탑, 노트북 등에 저장하거나 외부로 전송할 경우 반드시 암호화해 저장·전송 전송함으로써 당해 업무와 무관한 자가 임의로 열람 또는 개봉할 수 없도록 한다. 단, 저장·전송의 범위는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한다.
5. 가맹점 모집 시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경우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6. CATECA 등 "갑"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 데스크탑, 노트북에는 반드시 최신의 보안패치를 적용하고, 바이러스, 악성코드 탐지 및 치료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한다.
7. 대리점은 직원을 대상으로 년 2 회 이상 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8. "대리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정보가 유출되거나 본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함으로써 "본사" 또는 제 3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법적 책임이 부과될 경우 "대리점"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본사"는 가맹점모집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 "대리점"은 "본사"의 내부전산에 대한 접근하는 하는 경우 "본사"가 정한 기준 및 정책에 따라 정보의 열람 및 처리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본사"는 이에 대한 보안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0. 본 조항에 규정된 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2 년간 유지된다.

**제 4 조 [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 등]**

1. 관계법령에 의거, "본사"는 제 2 조의 정보보안준수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요청 또는 현장방문점검 등을 행할 수 있으며 대리점은 이에 응해야 한다.
2. "본사"는 "대리점"에 대하여 전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할 수 있으며, "대리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대리점"은 고객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및 관리 등을 제 3 자에게 재 위탁을 할 수 없으며,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반드시 "본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 조 [서약의 유효기간]**

1. 본 서약서는 서명일로부터 "본 계약"의 종료 시까지로 하며, "본 계약"의 기간이 연장 되거나 재계약시에는 본 서약서를 재징구할 수 있다.
2. "본사"와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본사"의 대리점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는 보관, 사용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할 수 없다.

[별첨 4]

**개정 법규 이행 준수 동의서**

“본사”와 “대리점” 체결한 대리점(가맹점모집인) 계약서(이하 ‘기본 계약’이라 함)의 부속 합의서로 최근 2017 년 4 월 26 일자로 개정되어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이하 ‘개정 법규’)의 준수를 위해 아래와 같이 동의 한다.

**제 1 조 [‘개정 법규’ 정의]**

1. ‘개정 법규’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7111 호) 및 이와 관련된 행정규칙, 감독규정 등을 의미하며, ‘대리점’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해당 법령의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

여전법 제 18 조의 3 제 4 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하 “ <b>대형신용카드가맹점</b> ”이라 한다.)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0> 1.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2.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이하 “ <b>보상금 등</b> ”이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여전법 시행령 제 6 조의 10 제 1 항 5 호	대형신용카드가맹점(법 제 18 조의 3 제 4 항 각 호 외의 부문에 따른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이 되려는 자에게 자기와 거래 하도록 부당하게 보상금 등(법 18 조의 3 제 4 항제 2 호에 따른 보상금 등을 말한다.)을 제공(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할 것
여전법 시행령 제 6 조의 14	① 법 제 18 조의 3 제 4 항 각 호 외의 부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란 직전 연도 1 년 동안의 매출액이 3 억원(개인 또는 법인이 둘 이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 <개정 2017.4.26>
여전법 제 70 조제 2 항	② 제 18 조의 3 제 4 항제 2 호, 제 19 조제 6 항 또는 제 24 조의 2 제 3 항을 위반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5.1.20>

**제 2 조 [‘개정 법규’ 사항 준수]**

1. ‘대리점’은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게 ‘기본 계약’에 따른 서비스 및 ‘본사’와 관련된 모든 사업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에 동의 한다.
2.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상세 목록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 -> 공시실 -> 신용카드 공시 -> 대형가맹점 명단(사업자번호, 가맹점명으로 검색)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개인 신용카드가맹점은 당사에서 확인 가능.

**제 3 조 [본사 책임의 제한 및 손해 배상]**

1. ‘대리점’은 ‘개정 법규’와 관련된 ‘본사’가 운영하는 ‘대리점’ 용 전산(https://cateca.kovan.com)의 공지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 및 열람하고, 공지사항의 게시로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고지 및 안내 의무는 충족되며, 추후 해당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대리점’에 귀속 된다.
2. ‘본사’ 또는 ‘대리점’의 ‘개정 법규’ 위반 행위로 상대방에게 제재 또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반한 당사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 4 조 [기타]**

본 동의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정 법규’ 및 ‘기본 계약’의 내용에 따르고, 감독 기관 또는 ‘본사’에서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대리점’은 이를 성실히 이행 한다.

**[별첨 5]****중고 POS 관련 고객신용정보 보안 협약서**

중고 POS 단말기 설치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고객 신용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아래'의 규정을 지키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이 설치한 총판 및 대리점에 있음을 협약 합니다.

- 아 래 -

**1. 목 적**

POS 보안 인증이 적용 되기 전 설치되어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POS 단말기에는 신용카드 결제 신용정보가 저장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고자 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및 책임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 근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0 조의 2 제 2 항 등에 따라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 된 경우 POS 단말기에 저장된 신용정보는 일정기간 안에 삭제 되어야 한다.

**3. 중고 POS 설치 제한**

- 1) 가맹점으로부터 회원의 신용정보가 삭제 되지 않은 미등록 중고 POS 단말기를 취득하거나, 제 3 자가 취득하는데 조력한 경우에는 단말기내에 저장 된 신용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단말기내에 저장 된 정보를 모두 삭제 하여야 한다.
- 2) 또한, 미등록 단말기를 등록 단말기로 교체할 경우 기존에 가맹점에서 사용하던 교체 대상 POS 단말기에서 신용정보가 삭제 되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신용정보정보유출 위험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규 단말기가 설치 되도록 한다.

**4. 손해배상**

개인 신용정보가 포함 된 중고 POS 단말기 유통으로 인해 신용정보가 유출 된 경우 발생 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별첨 6]

**가맹점모집인 등록신청인 고지사항**

■ 가맹점모집인 등록신청인은 아래 각항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항목은 반드시 자필로 '예', '아니오' 해당란에 표, 서명 및 날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6 조의 3 제 2 항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1.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가맹점모집인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5.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6.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가운데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7.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아니한 자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위 각 사항에 대한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신청인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위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였음이 판명되는 때에는 가맹점모집인 등록을 취소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여 신 금 용 협 회 장 귀하



[별첨 통합 날인]

“본사”

주식회사 코밴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6 길 10

코밴빌딩

사업자 번호 213-81-40742

대 표 이 사 양 원 기 (인)

“대리점”

사업자 번호 - -

대 표 자 (인)

[별첨 2~7] 동의서 및 확약서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각 2 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각 1 부씩 보관한다.